

의안 번호	1723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1. 4. 2.(금)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4. 2.(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4. 14.(수)

2. 제안이유

- 2021. 6. 30.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위탁기간 만료
공개모집을 통한 새로운 사업 운영자 선정 필요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자 모집)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 등)
- 위탁의 필요성
 -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 단체급식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취득한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및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위탁사무 내용

- 경로식당 운영 및 급식제공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배달

○ 위탁대상 개요

- 경로식당

연번	경로식당명	운영단체	운영실무자(대표자)	소재지	급식인원(명)	주당급식횟수	설립연월	지원액(천원)
1	학성	디딤돌봉사회	이에림(박경률)	구교로 92(학성동)	120	5	2018.08.	60,000
2	반구	중구새마을부녀회	김영조	내항4길 38(반구동)	95	5	1999.11.	44,375
3	성안	학누리	김정선(이병재)	성안2길 31(성안동)	100	5	2017.09.	38,750
4	북정	해남사	김미희(주지혜원)	도서관길 42(북정동)	135	6	1997.02.	61,875
5	성남	중구여성자원봉사회	김금옥(손태임)	장춘로 91-1(교동)	95	5	2000.02.	45,625
6	우정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김옥경(김진구)	우정10길 47-1(우정동)	100	5	2010.11.	48,750
7	태화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사람들	김순남(손경숙)	난곡10길 22(태화동)	200	5	2000.11.	86,250
8	다운	다운동자연보호협의회	김희숙(이명숙)	다운7길 78(다운동)	75	5	2010.11.	31,875
9	병영	병영1동그린리더협의회	남윤경	병영9길 5(동동)	95	5	2011.07.	45,625

※ 노인복지관경로식당 2개소는 별도 계약 체결(노인복지관 위탁 시 포함)

- 식사배달사업

식사준비장소	운영단체	운영실무자(대표자)	배달지역	대상인원(명)	주당운영일수
학성경로식당	디딤돌봉사회	이에림(박경률)	중구 관내 전체	110	5

※ 배달요일은 월~금(5일)이며 금요일 배달시 토요일분 포함하여 주당 6일분 지원

- 위탁기간: 2021. 7. 1. ~ 2023. 6. 30.(2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운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소요예산: 938,500천원(시661,625 구276,875)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 울산광역시 구·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시 수행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 또한,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후원금품 모집·배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수준을 바탕으로 2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한 기관 평가를 함으로 성과 측정 가능 ○ 보조금 정산·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은 만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및 일반 노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꾸준히 증가예상

○ 추진일정

-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021. 4. 21. ~ 5. 4.(14일간)
- 수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5. 21.(예정)
- 위·수탁 계약 체결: 5월말

4.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
-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단체급식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곳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과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덧붙여, 수탁업체의 보조금 정산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힘써 주시도록 미리 당부 말씀 등 필요함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자 모집)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